

2021년 하반기 영광군 자체감사결과 공개

□ 읍·면 종합감사

○ 기간 및 범위

| 구분 | 감사기간 | 감사범위 | 비고 |
|-----|---------------------------|------------------|----|
| 법성면 | 2021. 9. 28.~10. 1.(4일간) | 2018. 10.~감사일 현재 | |
| 영광읍 | 2021.10. 25.~10. 29.(5일간) | 2018. 11.~감사일 현재 | |

○ 감사반: 감사팀장 등 5명

○ 중점 감사사항

- 세출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실태
- 민원서류 처리 적정성 여부
- 각종 사업 설계 및 공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

○ 감사결과

| 구분 | 총 지적건수(건) | | | 행정상(건) | | | 재정상(건/천원) | | | | 신분상 |
|-----|-----------|------|------|--------|----|----|-----------|-------|-----|-----|----------|
| | 계 | 행정처분 | 현지처분 | 계 | 시정 | 주의 | 계 | 회수 | 추징 | 기타 | |
| 법성면 | 22 | 14 | 8 | 22 | 12 | 10 | 6,293 | 5,291 | 409 | 593 | 주의 26 |
| 영광읍 | 27 | 17 | 10 | 27 | 12 | 15 | 4,664 | 4,245 | 270 | 149 | 주의 32 |

I 법성면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① 1천만 원 초과 계약문서 수입인지 관리 소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과세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천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천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0천원의 수입인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을 확인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여 첨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하단에 별도로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3건의 계약 체결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인지 3건 60,000원을 첨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감사대상 기간 동안 계약(10,000천 원 이상) 체결 시 계약업체로부터 징구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45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 소인 처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방법)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인지세 납부·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계약업체에 안내토록 하고, 미 징구된 수입인지에 대해서는 징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 첨부된 수입인지에 대해서는 전자 소인처리(시정)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처리 소홀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르면 공사도급,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1,000천 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8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가 미 첨부 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개발공채 처리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 미 첨부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받아 지출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주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시정)

③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두고 기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했다.

- 법성면에서는 준공된 공사 201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함

⇒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해당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 하자검사 실시(시정 조치)

④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 「영광군 당직근무 규정」 제14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2항에 따르면 당직반장은 당직신고를 한 후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부책 및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 이를 주무과에 인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조(당직편성)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경우에는 당직반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8조(당직일지)에는 당직 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은 당직 책임자가 이를 당직일지에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성면에서는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 101일에 대해 당직근무일지 작성 관리 소홀 및 당직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및 복무점검을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 지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당직근무 종료 후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고 당직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 철저, 동일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철저(주의)

⑤ 민원발급기 증지 수입금 정산 소홀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제15조(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법성면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33회(2,026,900원)에 걸쳐 일일결산하지 않고, 1일에서 3일 이후 수납하는 등 증지수입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규정에 의거 증지대금의 일일 결산을 확행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주의)

⑥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게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수급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타인의 급여관리를 원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관리·사용능력을 확인하여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 법성면에서는 정신 및 발달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26명 중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7명을 제외한 19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및 사용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미징구)
-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만18세 초과자 4명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하지 않아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본인관리 확인 점검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기초수급자 중 정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조사하여 급여관리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급여관리자에 대하여 2021년 급여관리 상황을 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시정)

⑦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한다.
- 「농지법」 제7조제3항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농지 소유 상한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을 발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8조 제1항제3호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신청자의 총 농지 소유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주의)

⑧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2조(타법 개정 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회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농업용 창고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함에도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명에게 직불금 3,535,56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부당하게 지급된 농업소득직접지불금 회수조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시정)

⑨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미징구 및 취득세 미부과

- 각 읍면장(영광읍장 제외)은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청을 받아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인지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 군수로부터 이륜자동차 등록(사용·변경·폐지) 신고업무를 재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면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 그리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소인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수입인지 3,000원권을 징구하고 전자수입인지시스템을 통해 소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법성면에서는 총 9건 2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았다.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취득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재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1건에 대해 취득세 37,0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첨부 누락된 수입인지와 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하여 세입 조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시정)

⑩ 농업피해조사 관리대장 작성 소홀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시행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1호] 제10조에 따르면 농업재해 피해조사는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해야함

○ 그러나 법성면에서는 2019~2020년도 농업피해조사를 하면서 면장이나 이장, 담당공무원, 피해농업인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거나 피해 사진을 대장에 첨부하지 않는 등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함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농업재해 피해조사 업무 처리 철저(주의)

⑪ ○○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법성면에서는 ○○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를 추진하면서 되메우기 공중에 인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준공사진 확인 결과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경비 포함 36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되메우기(인력) 미 정산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369천 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⑫ ◇◇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법성면에서는 ◇◇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성토 운반 34㎥(운반거리 3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순성토 운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26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순성토 운반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260천 원에 대해 회수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⑬ 법성 ●●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법성면에서는 법성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토량 63㎥(운반거리 0.1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토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30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토처리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301천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⑭ 법성 ○○○ 마을안길 정비공사 추진 소홀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이행중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법성 ○○○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유공관 설치 시 뒤채움 잡석을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준공사진 확인결과 뒤채움 잡석 10㎥를 시공하지 않고 유공관이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경비 포함 74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뒤채움 잡석 미시공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749천 원에 대해 회수조치,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공사 감독 철저(시정)

① 회계관직 부재중 대리권자 미지정

-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 따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영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지정대리)에 의하면 “법정대리 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토록 하고 있고, 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광읍에서는 재무관 및 지출원의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읍장·부읍장이 출장 및 연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회계관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후 세출예산을 집행(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을 하여야 했음에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4건/130,237,220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관 및 지출원의 직무를 겸하고, 재무관·지출원 부재 중 회계관직 대리권자 지정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회계업무 처리 철저(주의)

②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은 업무시설로써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법 제22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할 소방훈련을 각 1회씩만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년에 2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같은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하여 청사 소방안전관리 철저(시정)

③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두고 기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했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였다.

⇒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해당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 하자검사 실시(시정)

④ 공금계좌 이자수입 처리 및 공공요금 납부 소홀

가. 공금계좌 이자수입 미처리

-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금과 지출금의 반납)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이자수입 총 4건 71,78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공공요금 납부업무 소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된 공공요금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연 납부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광읍에서는 공공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7,815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미처리된 이자수입과 부적정하게 지출된 연체금을 환수하여 세입조치, 관련 규정 준수하여 회계업무 철저히(시정)

⑤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업무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알려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영광읍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관리하면서 민방위대원 편성사실 및 임무통지 현황과 같이 해당 리 민방위 대장에게 대원 명부를 송부하지 않았거나 지연 송부하였으며, 2021년도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 추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주의)

⑥ 민원발급기 중지 수입금 납부 소홀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제15조(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77회(17,876,600원)에 걸쳐 일일결산하지 않거나 1일에서 최대 4일 이후 납입하는 등 증지수입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규정에 의거 증지대금의 일일 결산을 확행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주의)

⑦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이 경우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이다.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 따라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접수할 때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자 및 대리인 인적사항, 위임 사유, 위임일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 발급을 거부하고 보완을 요청하여 위임장의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표시하여야 했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서명누락 및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 121건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121건에 대하여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접수인을 날인하였더라도 발급번호를 미기재 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 준수하여 인감발급 업무 추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주의)

⑧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소홀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비가 포함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도비가 포함된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군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공동급식비’ 등 개소 당 연간 약 5,28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임.
-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2020년 경로당 운영 안내」 등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 대표자와 총무가 관리·운영하고 집행결과를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현금출납부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지출한 경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고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같은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영광읍에서는 69개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공동부식비로 연간 311,940천원(2020년 기준)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연 2차례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구입에 대하여 비품관리대장 또는 정산서 서식에 의한 중요재산 증가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비품구입 및 수리·수선·소규모 공사건에 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설치사진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처리하여 보조금 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과 수리·수선·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설치사진을 징구하도록 안내하여 비치하시고

⇒ 2021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매뉴얼을 연찬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고 보조사업자인 경로당 대표 및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합법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주의)

⑨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게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수급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타인의 급여관리를 원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관리·사용능력을 확인하여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영광읍에서는 수감기간 현재(2021. 10. 29.) 정신 및 발달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 급여 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108명 중 급여 관리자를 지정한 37명과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한 59명을 제외한 49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급여 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복지급여 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30명에 대하여 급여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관리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급여관리를 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하시고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반기별 점검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시정)

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농지법」 제57조에서는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표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도 영광읍에서는 2019. 2. 27.부터 2019. 8. 2.까지 주말·체험영농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였음에도 4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주의)

⑪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2조(타법 개정 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법 제9조제3항제5호(타법 개정 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국·공유지 대부계약 미체결자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 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 요건을 재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단독 주택, 창고(자재보관창고)시설 부지조성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와 공유지 무단점유자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함에도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3명에게 직불금 1,901,4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부당하게 지급된 농업소득직접지불금 회수 조치하여 세입처리, 직불금 지급 시 농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시정)

⑫ 농업피해조사 관리대장 작성 소홀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 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시행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 51호]제10조에 따르면 농업재해 피해조사는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

(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해야 한다.
- 농업재해의 지원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준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며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 피해정도의 구분, 피해액, 농가단위 피해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피해사진의 첨부 등이 특히 중요하다.
- 그러나 영광읍에서는 2019년도 농업피해조사를 하면서 읍장이나 마을이장, 담당공무원, 피해농업인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거나 거의 모든 조사대장에 피해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등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농업재해 피해 조사 업무 처리 철저(주의)

⑬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2020년)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제비율 2020년 기타경비는 4.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영광읍에서는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원가계산 제비율 2020년 기타경비를 규정보다 0.5%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금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82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기타 경비 미 정산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82천 원 회수 조치, 업무 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⑭ 영광 田田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영광읍에서는 영광 田田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개거 구조물 레미콘 타설 공중에 인력운반 타설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경비 포함 1,24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레미콘 타설(인력운반)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1,240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⑮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영광읍에서는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순성토 운반 51㎥(운반거리 2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순성토 운반 31㎥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42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순성토 운반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427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⑩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2018년)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영광읍에서는 영광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순성토 운반 27m³(운반거리 3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순성토 운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19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순성토 운반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194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⑪ 영광 ▨▨ 안길 보수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영광읍에서는 영광 ▨▨ 안길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토량 54m³(운반거리 3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토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37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토처리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371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법성면 사례 1」

쓰레기 불법 투기 공유수면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실태

- 위치 및 면적 : 법성면 법성리 1166 지선 공유수면, 1,406㎡
- 투기 상황
 - 법성리 1166번지에 인접한 법성리 1157-1번지에서 폐지 수집 등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 공유수면에 쓰레기 및 각종 고물을 방치하여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
 - 동 공유수면은 불법으로 조성된데다 현재까지 불법매립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태어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방치되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장으로 인식하고 불법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투기

 쓰레기장화 된 공유수면 환경개선 필요성

-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고착화된 공유수면은 법성포구를 이루는 해안도로변으로 지역주민들의 산책 코스이며, 은선암 및 법백교를 가기 위한 길목으로써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 산책하는 지역민들도 이 곳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굴삭기 및 덤프 등 장비를 이용한 불법 매립을 근절하기 위해 공유수면 진입로에 철문 설치 및 진입 차단 조치(해양수산과)
- 공유수면에 방치된 쓰레기 및 임시 보관 고물 냉장고 수거
- 공유수면에 시비(施肥) 및 코스모스 씨앗 파종 등 꽃밭으로 조성

 추진성과

- 불법 매립 및 쓰레기 투기장이 꽃밭으로 탈바꿈
- 개선된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칭찬이 잦고, 산책코스로 각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활력있는 주민자치 기반 마련

I 추진방침

-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가치 형성에 기여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II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21. 1월
- 프로그램 운영 : 2021. 2월~현재
- 13개, 904회 수업, 1,192명 수강

III 향후계획

-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 2021. 12.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2021. 12.

IV 기대효과

-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 주도의 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